

■ 대통령 탄핵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

헌법이 보호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와 한계

이번 대통령 탄핵결정 중 특히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평가한 판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탄핵심판 결정문 45~46쪽). 대통령 등 정치권의 재산출연 요구와 그에 응하여 재산을 출연한 기업의 행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출연 요구행위가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는 탄핵심판의 본질에 입각해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평가만을 한 것이지, 탄핵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기업의 출연행위가 위법행위가 아니라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까지 판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경영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헌법과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준법경영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헌법이 보호하는 기업경영의 자유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는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결정,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11 결정 등).

이번 탄핵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보면서,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연요구가 체육진흥, 중소기업 육성, 인재 추천 등을 위해 필요하였을지라도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르지 않아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탄핵심판 결정문 46쪽).

종래 이른바 '국제그룹 해체사건'(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에서도 기업에 대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가 문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공권력이 경영권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긴절한 필요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에 대한 불개입의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쟁의 자유는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경쟁의 자유는 국가에 의한 개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의한 담합 등 '경제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사건'에서 '직업의 자유'로부터 기업의 '경쟁의 자유'를 처음 도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이후 경쟁의 자유의 근거를 기업의 자유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이른바 '퇴직금 사건',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11 결정).

2. 기업의 자유와 한계

기업의 경제활동은 개인의 직업활동에 비하여 사회적 영향력과 공익에 대한 고려가 강조됩니다. 기업의 경제적 선택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넓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기업은 더 이상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적 조직체이므로 그 현황과 활동상황을 투명하게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른바 '신문법 사건'(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에서 기업활동의 한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신문기업의 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본 사건입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와 대응하여 문제 된 것은 위법한 요구에 응하여 재산을 출연한 기업의 행위입니다. 탄핵심판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로까지

나아가지 않았지만,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따라 그와 결부된 기업의 민원 내지 로비행위가 확인되고 대가성까지 인정된다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에 저촉되어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있어 온 대정부 민원이나 로비행위에 대해서도 과연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위법의 소지는 없는지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3. 상시적 준법경영에 대한 요구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외환·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① 현행 상법은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를 두고 있으며, ②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통제·위험 관리 기준과 준법감시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016년 8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준법감시인을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점에서 이하의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와 구별됩니다. 상법상 자산 5천억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인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2항, 4항, 상법시행령 제39조). 준법통제기준에는 준법지원인의 임면, 업무수행, 임직원에 대한 준법 교육 등의 내용을 담습니다(상법 시행령 제40조).

이처럼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 위반을 방지할 때, 차후 법률 분쟁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경영위축의 위험 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